

중국의 환경현황

1) 개 관

□ 청결생산 촉진법

○ 도입 시기 : 2002.6.29 발표, 2003.1.1

○ 적용 대상 : 중국내 생산과 서비스 활동 종사 업체

○ 규제 성격 : 강제

- 미이행시 행정처분(벌금포함) 민사 및 형사처벌

○ 규제 내용

- 신축·개축·확장 건설하는 프로젝트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, 원료 사용, 자원소모, 자원종합이용 및 오염물 발생과 처리 등에 대해 분석·검토

- 자원이용율이 높고 오염물 발생이 적은 청정생산기술과 공법 및 설비를 우선적으로 채용

- 제품의 포장물 설계는 그 생명주기내에 인체건강과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, 무독·무해하거나 쉽게 분해되고 회수이용이 편리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선택

- 기업은 합리적인 제품포장으로 포장재의 과도사용과 포장성 폐기물발생을 저감

- 건축공정은 절전·절수 등 환경과 자원보호에 유리한 건축설계방안, 건축과 개보수 재료, 건축부속품 및 설비를 채용

- 강제회수목록에 포함된 상품이나 포장물을 생산·판매하는 기업은 반드시 상품을 폐기하거나 포장물을 사용한 후에 동 상품이나 포장물을 회수

□ 그린생산 심사 집행방법

○ 도입 시기 : 2004.8.16 발표, 2004.10.1 실시

○ 적용대상 : 중국내 생산과 서비스 활동 종사 업체

○ 규제 성격 : 자발/강제

- 미이행시 행정처분(벌금포함) 민사 및 형사처벌

○ 주요내용

- 그린생산 심사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생산과 서비스 과정에 대해 조사와 진단을 진행하여 에너지소모, 물질소모가 높고 오염이 심각한 원인을 찾아내서 유독·유해 물질의 사용, 생산 감소, 에너지소모와 물질소모 및 폐기물 생성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제출하며 나아가서 기술경제 및 가능한 그린생산 방안을 선정하는 과정을 가리킴.

- 그린생산 심사는 자원심사와 강제성 심사로 구분하며 오염물배출이 국가표준 또는 지방표준에 도달하는 기업에서는 자발적으로 그린생산 심사를 조직, 실시할 수 있으며 자원절약, 오염물배출 감소목표를 제출 가능

- 오염물배출이 국가와 지방에서 제정한 배출표준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유독, 유해 원료를 이용하여 생산을 하거나 또는 생산과정에서 유독·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강제성 검사를 실시

□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

○ 도입 시기 : 2004.12.29 수정, 2005.4.1 실시

○ 적용대상 : 고체폐기물의 생산자, 판매자, 수입자, 사용자

○ 규제 성격 : 강제

- 미이행시 행정처분(벌금포함), 민사 및 형사처벌

○ 주요내용

- 제품의 생산자, 판매자, 수입자, 사용자는 자체 발생한 고체폐기물에 대해 오염방지 책임을 짊.

- 원료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무해화 처리 이용이 불가능한 고체폐기물의 수입을 금지

-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고체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입을 제한 또는 자동허가 분류관리제도를 실시

- 환경오염의 법정소송이 발생할 경우 오염발생 주체인 가해자가 그 행위와 피해결과가 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도록 규정

- 생산업체들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폐기처분한 제품이나 사용한 적이 있는 포장물에

대해서도 회수 이용 혹은 처리의 책임을 부여

□ 오존층 파괴물질 규제

○ 근거 법령 : 대기오염방지법 및 오존층 파괴물질 수출입 관리 정책

○ 도입 시기 : 1999.3

○ 주요 내용

-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중국은 오존층 파괴물질의 수출입량 및 국내생산에 대하여 쿼터제(생산할당제)를 실시하고 나아가 주요 오존층파괴물질에 대해서는 생산 및 소비금지 일정을 규정

- CFCs 6종(CFC-11, 12, 13, 113, 114, 115), halon 2종(halon-1211,1301) 등 10종의 지정 물질 및 이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수출입 허가제도 시행(사염화탄소의 경우 수입금지)

- CFCs 6종에 대해서 제조업체가 생산하기 전에 생산할당량을 부여받고 이 범위 내에서 생산하도록 규정

- 2004.5 공포한 “MeBr(메틸 브로마이드)의 생산허가증 및 할당관리 실시에 관한 공고”에 따라 MeBr도 생산할당제 적용대상에 포함.

- 생산 할당된 물질 또는 제품의 경우 매매기업 쌍방 모두 생산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당해 미사용 할당량에 대해 국가의 승인을 통해 매매가능

- CFCs 6종, halon 2종 등 주요 오존층 파괴물질은 점차적 감소를 통해 2010년까지 생산 및 소비 완전 금지 예정

2) 주요 산업별 환경 규제 조치

◆ 해외환경현황 <중국편>

가. 전기·전자 산업

① 폐가전제품 회수

□ 근거규정 : 폐·구가전제품 회수처리 관리조례 (안)(국무원 상정 심의 중)

□ 도입시기 : 2007년 시행예정 (현재 국무원 심의중)

□ 대상 품목 : 중국내 TV·냉장고·세탁기·에어콘·컴퓨터 등 5종 전자제품의 생산자·수입자·판매자

□ 규제 성격 : 강제

○ 미이행시 행정처분(벌금포함) 민사 및 형사처벌

□ 주요내용

○ 가전제품 생산기업은 회수·재이용에 유리한 설계 방식을 채택해야 하며, 무해물질재료 및 회수·재이용 가능한 재료를 선택하고, 설명서에 주요재료 정보를 제공

○ 가전제품 생산기업은 자체로 폐·구가전제품을 처리하거나, 자격있는 기업에 위탁처리해야 하며, 성급 주관부서에 생산하는 가전제품의 종류·생산량·판매량(수출량) 등 관련 정보 제공

○ 가전제품을 수입하는 인수자(대행자)는 생산기업 책임과 동일하며 수입 가전제품에 대해 세관 수입절차 진행과 동시에 성정부 주관부서에 신고(미신고시는 수입가전제품 통관 불허)

○ 판매자와 A/S기관은 폐·구가전제품 회수의무를 가지며, 회수한 폐·구가전제품은 유자격 처리기업에 판매해야 하며, 중고 가전제품 판매자는 처리 기업에서 표시한 중고제품(구가전)만을 판매 가능

○ 회수기업은 회수한 폐·구가전제품을 처리기업에 판매해야 하며 자체로 조립·판매 불가

○ 국가 관련 기준 및 규범에 따라 회수 폐·구가전제품을 분류·측정, 수리후 안전표준을 만족하는 제품은 '재이용품' 표지를 붙여 중고품으로 판매

○ 폐가전제품은 유독·유해물질을 무해화 처리하고, 노천소각·산성세척 등 재래식 처리방식을 금지

○ 구가전제품은 지정된 중고시장에서 판매해야 하고, 등록제도를 엄격히 하며 구체적 방법은 성정부에서 제정

② 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

□ 근거 법령 :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(안)

□ 대상 품목 : TV, 컴퓨터, 가전용전자제품, 전자통신제품, 전자측정기구, 전자레이더, 전자부품 등의 전기전자 제품(국내 생산품, 수입품 모두 대상)

□ 도입 시기 : 미정(국무원 심의중)

□ 규제 성격 : 강제

□ 주요 내용

○ 폐기되는 전자제품에 의한 환경오염의 예방과 재활용촉진 차원에서 친환경설계(eco-design), 친환경 소재 및 청정기술 채용을 요구

○ 유독성이 없으며 회수 및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 재료를 이용하도록 하는 한편, 포장재의 성분 표시 의무화

○ 제품에 포함된 납, 수은, 카드뮴, 6가 크롬, PBB, PBDE의 함유량을 점차 감량하여, 2006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상기 물질의 사용을 금지

○ 전자정보제품의 사용기간은 국가가 정하여 관리하게 되며, 시판 제품에는 함유된 특정 유해물질의 이름과 함유량, 회수가가능여부 등이 안전 사용기간과 함께 표시

○ 수입 부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도 의무화하는 한편, 생산자는 제품 회수, 처리, 재이용의 책임을 지며, 생산제품의 안전사용기간의 목록과 기간을 정부에 기록 등재할 의무가 있음.

③ 배터리 규제

□ 근거 법령 : 고형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 - 폐전자오염방지 기술정책

□ 도입 시기 : 2003. 10. 9

□ 규제 성격 : 강제

□ 주요 내용

○ 알칼리성 아연, 망간 배터리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되고 있으며, 2005년 1월부터는 0.001% 이상으로 강화

○ 니켈-카드뮴 배터리, 납축전지, 기타 유해 배터리에 대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저비용 회수 처리를 규정. 특히, 폐납축전지에 대해서는 회수 이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다른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을 금지

④ 에너지효율 표기

□ 근거 법령 : 실내 공기조절기 에너지효율 표기 실시세칙, 가정용 냉장고 에너지효율 표기 실시세칙, 폐·구가전제품 회수처리 관리조례(안)

□ 도입 시기 : 2005. 3. 1

□ 대상 품목 : 중국내 생산 및 수입 냉장고·에어컨

□ 규제 성격 : 강제

○ 미이행시 행정처분(벌금포함)

□ 주요내용

○ 소비자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에너지효율 표기상에 ▲생산자명 ▲제품규격모델 ▲에너지효율등급 ▲에너지효율의 기준이 되는 국가표준코드 등을 표기하도록 규정

○ 특히 에어컨의 에너지 효율표기 관련 ▲구체적인 에너지 효율비교 ▲제냉량(와트) ▲입력공률(와트)의 내용을 명시하도록 함.

○ 냉장고 에너지 효율표기에 있어 ▲소모전력량(킬로와트시/24시간) ▲냉장고 공간별 실내용적(리터) 등을 밝히도록 규정

나. 화학 산업

① 신화학물질 관리제도

□ 근거 법령 :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방법

□ 도입 시기 : 2003. 9. 12

□ 주요 내용

○ 신화학물질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 대하여 환경보호총국의 화학품 등기센터에 화학물질의 관련 정보를 포함한 신고서 제출하여 승인 받도록 의무화

○ 환경보호총국이 설치한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전문가평가 심사위원회에 의해 신고된 신화학물질의 환경영향 평가를 통해 등기 여부 결정

○ 환경보호총국에 대해 국내 생산 또는 수입한 화학물

◆ 해외환경현황 <중국편>

질 리스트 작성, 공표 및 관련 기술 규범의 제정 의무

○ 단, 연구목적으로 생산 또는 수입되는 100 kg 이하의 신화학물질, 독성 테스트를 위해 수입되는 신화학물질 샘플 등은 적용대상서 제외

다. 자동차 산업

① 배기가스 규제

□ 근거 법령 : 자동차배출 오염방지 기술정책

□ 도입 시기 : 1999. 5

□ 규제 성격 : 강제

□ 주요 내용

○ 중국 내 생산/판매되는 모든 제작차(디젤차량, 모터사이클 및 자동차 엔진 포함)에 대해서는 자가진단장치 장착 권고하고 Euro 기준을 활용하여, CO, HC, NOx, PM 등에 대한 단계별 배출저감 목표 설정

○ 경량차량(3.5톤 이하)의 경우 2000년부터 Euro I 기준을, 2004년 이후 Euro II 기준을 적용

○ 중량차량(3.5톤 초과)의 경우 2001년부터 Euro I 기준, 2005년 이후 Euro II 기준 적용 중 (2010년까지 국제 배출 규제 수준에 부합하도록 할 계획)

○ 자동차 밀집지역이 대도시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특별 관리 기준을 적용하며, 현재 사용 중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검사 및 관리 시스템 강화, 차량관리업체에 대한 인증 및 품질관리 시스템을 수립할 예정

② 자동차 연료 품질규제

□ 근거 법령 : 대기오염 방지법, 자동차배출 오염방지 기술정책

□ 도입 시기 : 1999. 5

□ 규제 성격 : 강제

□ 주요 내용

○ 무연 휘발유 사용 : 2000. 1. 1부터 유연휘발유 생산을 중단하고 무연 휘발유 생산으로 전환, 유연휘발유 사용 중지 촉진을 위해 1999. 1. 1 이후 이의 사용에 대한 소비세 부과, 휘발유 첨가제로 TEL(tetraethyl-lead)의 생산, 판매 및 수입 금지하고, 고품질의 무연 휘발유 개발 촉진을 권고

* 무연휘발유 : 납함량 0.013g/L 이하인 옥탄가 90 이상의 휘발유로 정의됨.

○ 저항 경유제품 개발 촉진 : 현재 적용되는 경유의 황함량 기준은 2,000 ppm이며, 저항 경유제품 개발 촉진을 권고

* 유럽기준에 준하는 휘발유 및 경유 품질 기준을 제정

3) 정부 및 기타 단체의 대응전략

□ 청결생산

○ 국가는 청정생산 표창 및 장려제도를 수립, 청정생산무중 그 성적이 뛰어난 기업과 개인에 대하여 인민정부는 표창을 수여

○ 청정생산연구와 시범사업 및 교육 등에 종사하는 경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동급 재정에서 배정하는 관련 기술진보 전문가금 지원범위에 포함.

○ 국가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발전기금중 응당 수요에 따라 중소기업이 청정생산을 실시할 수 있도록

지원을 위하여 적당한 금액을 배정

○ 폐기물을 이용하여 생산한 상품과 폐기물로부터 회수한 원료에 대하여 세무기관은 국가 관련규정에 의거 세금감면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

○ 기업은 청정생산 심의와 배양에 사용되는 비용을 기업 경영원가에 포함 불가

□ 그린생산

○ 자발적으로 그린생산심사를 실시하는 기업 그리고 그린생산 방안을 실시한 후 뚜렷한 효과를 거둔 기업에 대해, 성급 이상 발전개혁(경제무역), 환경보호 행정주관 부문에서 표창을 하며 동시에 현지 주요 매체에 발표

○ 각급 발전개혁(경제무역) 행정주관부문에서 국가 중점계획 및 지방투자 계획을 제정 또는 실시할 때, 기업 그린생산 실시방안중의 에너지절약, 절수, 종합이용, 자원 이용률 향상, 오염방지 등 그린생산 항목을 중점분야에 열거하고 투자를 적극 지원

○ 오염배출비용 징수금액은 기업의 그린생산 지원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각급 재정부문, 환경보호부문은 오염배출 징수금액을 《오염배출비용 징수사용관리조례》규정에 부합되는 그린생산 항목실시에 우선 사용할 수 있음.

○ 수요에 따라 중소기업발전기금의 일정한 금액을 중소기업의 그린생산 실시에 지원할 수 있음.

○ 기업은 그린생산심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기업의 경영지출 또는 관련비용 과목에 열거할 수 있음.

○ 기업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기업내부에서 그린생

산 표창장려제도를 구축할 수 있으며, 그린생산심사 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인력에 대해 일정한 지원을 할 수 있음.

□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(2006.1.1 시행 예정)

○ 향후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이용계획에 따라 재생가능 에너지산업 발전지도 목록을 제정 및 발표하고 동 산업을 과학기술발전 및 첨단기술산업 발전의 우선 육성분야로 포함시킬 계획

○ 중국정부는 자금지원을 통해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 및 이용의 과학기술연구와 응용시범 및 산업화를 장려하여 재생에너지 분야의 ▲기술진보 ▲생산원가절약 ▲제품품질 향상 등을 추진

○ 중국정부는 태양 에너지 온수시스템, 태양 에너지 난방 및 냉방시스템, 태양에너지 발전시스템 등 태양 에너지 이용을 장려

○ 향후 부동산 개발업체는 관련 기술규범에 따라 건물 설계와 시공과정에서 태양에너지 이용을 위해 필수조건을 제공하도록 요구

○ 국가 재정부는 재생가능 에너지발전 전문자금 지원 정책을 통해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이용에 관한 과학기술 연구와 표준제정 및 시범공사를 지원하고 농촌지역의 생활용 에너지에 있어서 재생가능 에너지 이용 프로젝트의 추진을 지원

○ 이밖에도 빈곤지역과 섬지역을 대상으로 재생가능 에너지의 독립적인 전력시스템 건설 및 재생가능에너지의 감측과 평가, 상관 정보시스템 건설을 지원하고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이용설비의 현지화 생산을 추진 ◀